

第122回(臨時會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

第1號(附錄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

目 次

- 1.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(案) 1面

1.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(案)

의 안	876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2. 6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'98년도부터 추진해온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2001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초과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한 「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「지방자치단체정·현원관리지침」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조례 제437호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조례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0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3. 개정근거

가. 관례법령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(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) - 대통령령 제17624호

나. 관계지침

- 지방자치단체기구정원규정(대통령령) 개정에 따른 정·현원관리지침 이첩통보
(서울시인사 12100-1943, 2002.6.11)

4. 예산수반사항 : 불필요

5. 개정(안)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437호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0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〈신·구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조례 제437호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부칙 제3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(생략) <u>< 신 설 ></u>	조례 제437호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부칙 제3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①(현행 본문과 같 음)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 는 현원 40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 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